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14098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8가단201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1)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9. 4. 15. 원고와 사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연 1,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4.까지 위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2010. 4. 15.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6.부터 2018. 1.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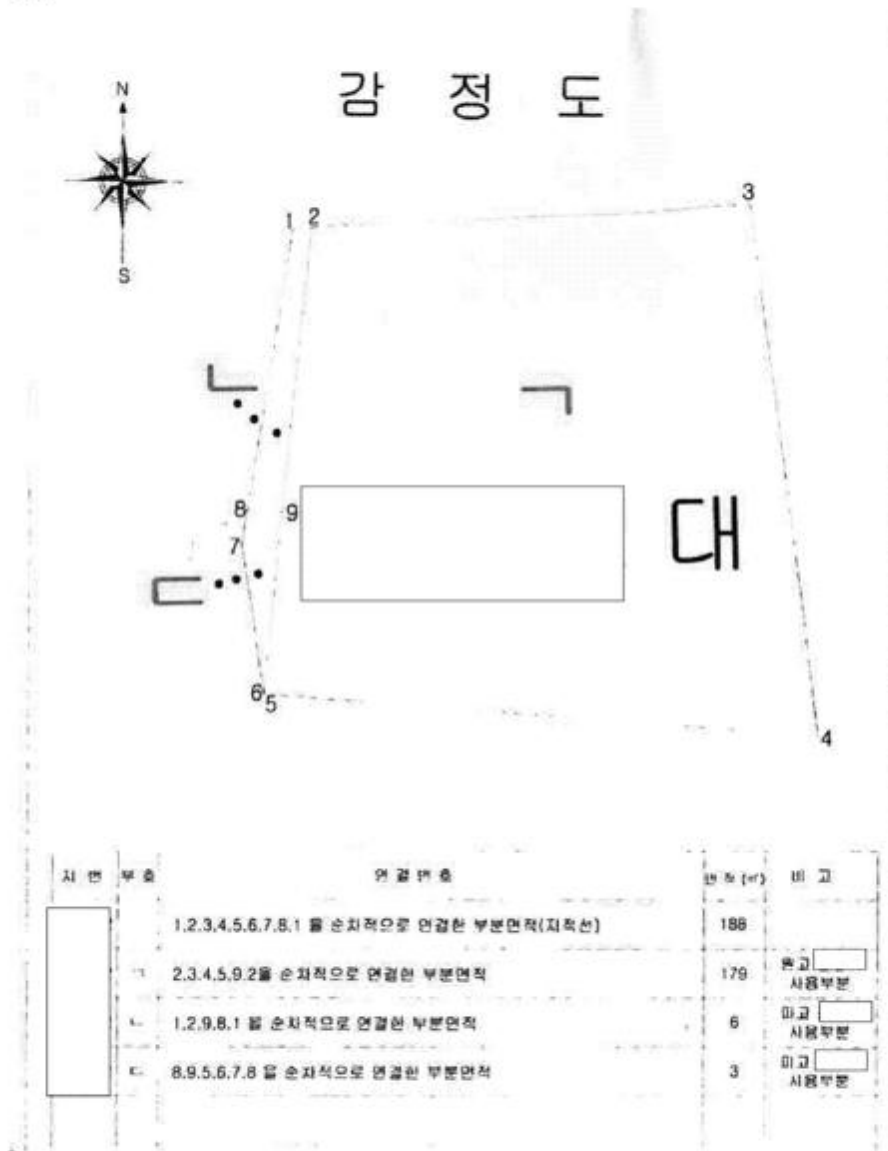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4. 15. 이후 임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나 을나 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하여 연 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2015. 1. 26.경부터 2018. 1.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ㄴ' 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김민지

별지



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